

의안번호	2215649
의 퇴 인	손명수의원
회 답 일	2026.2.11.
추 계 번호	25B72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설립 초기 2년간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1,400만원, 2028년 4억 1,3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8억 2,700만원(연평균 1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안 제38조제5항)	414	413	-	-	-	827	165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산된 결과로,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8조제5항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u>운영기관</u>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8조제5항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운영기관의 지정,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운영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아 현시점에 지원규모를 확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기초로 운영기관 설립 초기 2년간 운영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인증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운영기관 설립 초기 2년간 위탁비용을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임(녹색건축 인증사업: 전년도 인증수수료의 5%를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에 지원)¹⁾

1)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0조(인증 업무 지원)

-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 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운영기관은 회계가 종료된 경우 전문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 내 인증업무 운영비용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 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업무 운영비용 산정기준, 수입 및 지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등 적용²⁾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의 설립 초기 2년간 운영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추산함
- (인건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행정전담 인력 1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구성됨
 - (내부 연구진) 운영기관 내부 전문연구 인력의 기술 지원 및 자문 등 9인 (85백만원)
 -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조정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5.9.)

(단위: %, 천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3.3
명목임금상승률	3.2	3.3	3.3	3.3	3.3	3.3
공공기관 신규채용 기관부담 요율	11.436	11.749	12.064	12.405	12.749	13.095
공공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6,992	7,129	7,271	7,417	7,565	7,716

[표 2] 내부 연구인력 인건비 세부내역: 2026년 기준

(단위 : 원)

공종	인원 (인)	참여율	인건비 단가(월)		인건비(연간) (인원×월인건비 적용단가×12개월 ×참여율)
			기준단가 (월) ²	적용단가 (월) ³	
책임연구원	1	20%	3,783,728	10,720,563	19,297,013
연구원	4	10%	2,901,312	8,220,384	39,457,843
연구보조원	4	10%	1,939,429	5,495,049	26,376,235
소계					85,131,091

주 1.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적용

2. 2026년 인건비 기준단가(월)는 월 22일, 참여율 50% 기준으로 산정

3. 인건비 적용단가(월) = (기준단가×2)×(1+(5/12*)), * 5/12 = 상여금(월임금×4/12)과 퇴직급여충당금(월임금×1/12)을 합산한 비율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외부 전문가) 전문위원회(9인×3개 분야 위원회) 활동수당 및 외부자문료 지급(30백만원)
 - 위원회별 10백만원×3개 전문위원회(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 (전담 행정인력 인건비) 인증 운영 사무국을 전담할 행정인원 1인 채용(50백만원)
 - 인건비 증가율 및 기관부담경비(보수×기관부담요율)는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평균상승률 및 공공기관 신규채용 기관부담요율 전망치를 적용함
- (사업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고도화 및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DB구축비와 기술정보활동 및 네트워킹 사업비 등(210백만원)
 - (2027년) 인증제도 정보시스템 및 DB 구축(130백만원), 기술정보활동 및 네트워킹(80백만원)
 - (2028년) 인증제도 정보시스템 및 고도화(80백만원), 인증제도 실증기반 인증기준 고도화(130백만원)

[표 3] 사업비 세부내역: 2027~2028년

2027		2028	
사업명	사업비	사업명	사업비
인증제도 정보시스템 및 DB구축·운영	130	정보시스템 고도화	80
인증실적 및 평가결과 데이터베이스(DB)관리 시스템 구축	80	구축된 DB를 활용한 인증성과 분석기능 강화	30
장수명 주택 기술강화, R&D 시범사업 기획	50	정책·지자체 활용 시스템 정비 및 홍보, 수수료 기반 자립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비	50
기술정보활동 및 네트워킹	80	인증제도 실증기반 인증기준 고도화	130
전문위원회 운영, 정부부처, 인증기관간의 네트워킹 지원(정례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	20	기존 인증제도 운영 결과 분석 및 인증기준 고도화 추진	80
인증기준 제·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 활용비	40		
인증품질(QA) 시스템구축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	20	타 인증제도(녹색건축인증,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인증 등)와의 연계성 정비 등	50
합계	210	합계	21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예산정책처 재정리

□ (운영비) 장수명 주택 인증 기관 운영 및 제도 홍보비용(27백만원)

- 발간 및 유인물비: 10백만원
 - 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지침 및 매뉴얼 개발
 - 인증실적 분석보고서 발간
- 일반행정 및 여비: 10백만원
 - 현장 실사 국내여비 등(5백만원)
 - 회의비, 우편료, 사무용품 등(5백만원)
- (자산취득비) 신규 행정인력에 대한 1인당 7.13백만원(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2027년 기준)으로 사업 첫 해에만 소요됨

□ (추계결과)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설립 초기 2년간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건비 (A)	내부인력	88	91	-	-	-	179
	외부인력	31	32	-	-	-	63
	신규채용	58	60	-	-	-	117
	소계	177	183	-	-	-	359
운영비(B)		28	21	-	-	-	48
사업비(C)		210	210	-	-	-	420
추가재정소요 (A+B+C)		414	413	-	-	-	827

주 1. 2027년 운영비에는 신규 인력의 자산취득비(7백만원)이 포함됨

2.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산된 결과로,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